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2. 거래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나. 사회복지무요원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 을 충족하는 사람

	<p>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p> <p style="margin-left: 20px;">^{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p> <p>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p> <p>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p> <p>다.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p> <p style="margin-left: 20px;">^{주2)}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p> <p style="margin-left: 20px;">^{주3)}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 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p> <p>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주4)}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p> <p>*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청년희망적금을 보유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p>
<p>상품유형</p>	<p>자유적립식</p>
<p>계약기간</p>	<p>60개월</p>

<p>최저입금금액</p>	<p>최소 1천원 이상, 천원 단위로만 가능</p>															
<p>저축한도</p>	<p>매월(월초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주1)} 840만원 이하 ^{주1)} (예시) '23.7.10일 가입 시 1년차('23.7.10~'24.7.9), 2년차('24.7.10~'25.7.9), 3년차('25.7.10~'26.7.9), 4년차('26.7.10~'27.7.9), 5년차('27.7.10~'28.7.9)</p>															
<p>기본이자율 (2023.06.15 현재, 세전)</p>	<p>기간</p>	<p>최초 3년간 [고정]</p>	<p>3년 초과~5년 이내 [매 1년마다 변동]</p>													
<p>현재, 세전</p>	<p>기본이자율</p>	<p>연 4.50%</p>	<p>적용금리 변경시점*에 영업점 및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본 적금의 고시 이율</p>													
<p>※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 ※ 정부기여금에도 기본이자율 지급, 특별중도해지시 기본이자율 지급 * 신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일 및 이 날로부터 매 1년 경과 해당일</p>																
<p>우대이자율 (2023.06.15 현재, 세전)</p>	<p>다음의 우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대이자율 최고 연 1.50% 적용 ※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p>															
	<p>항목</p>	<p>우대 요건</p>		<p>우대 이자율</p>												
	<p>소득+ 우대</p>	<p>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1,600만원 이하^{주1)}인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이자율 제공</p> <table border="1" data-bbox="624 1290 1294 1368"> <tr> <td>총족횟수</td> <td>5회</td> <td>4회</td> <td>3회</td> <td>2회</td> <td>1회</td> </tr> <tr> <td>우대이자율</td> <td>연0.5%</td> <td>연0.4%</td> <td>연0.3%</td> <td>연0.2%</td> <td>연0.1%</td> </tr> </table>		총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우대이자율	연0.5%	연0.4%	연0.3%	연0.2%	연0.1%	<p>최고 연 0.5%</p>
총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우대이자율	연0.5%	연0.4%	연0.3%	연0.2%	연0.1%											
	<p>급여 우대</p>	<p>이 상품 신규 후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주2)} 실적(건당 50만원 이상)이 30개월 이상 있는 경우</p>		<p>연 0.3%</p>												
	<p>신한카드 결제 우대</p>	<p>이 상품 신규 후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이 30개월 이상 있는 경우</p>		<p>연 0.3%</p>												
	<p>첫 거래 우대</p>	<p>이 상품 신규 직전 1년^{주3)}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상품이 없었던 고객이 이 상품을 신규한 경우</p>		<p>연 0.4%</p>												
<p>^{주1)}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가입신청 및 1년 주기의 유지심사에서 확인되는 개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 (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②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p>																

	<p>주3)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1년 전 ~ 예금 신규 전일 예) 2023.07.10 가입 시 2022.07.10~2023.07.09</p> <p>※ 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입니다.</p> <p>※ 첫 거래 우대이자율 대상은 상품가입 시 확인 가능합니다.</p> <p>※ 각 금융기관별 청년도약계좌의 우대이자율 적용 요건이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p>												
<p>최고이자율 (2023.06.15 현재, 세전)</p>	<p>최고 연 6.00%</p> <p>※ 우대 이자율 최고 연 1.50% 적용 시</p>												
<p>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p>	<p>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p>												
<p>특별중도해지</p>	<p>아래사유 발생할 경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해지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 <p>※ 2~7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시 가능함</p>												
<p>중도해지 이자율 (2023.06.15 현재, 세전)</p>	<p>○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p> <p>○ 1개월 미만: 연 0.10%</p> <p>○ 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X(1-차감률)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p> <p>※ 차감률(2023.06.15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387 1588 1414 1693"> <tr> <td>경과기간</td> <td>1개월이상</td> <td>3개월이상</td> <td>6개월이상</td> <td>9개월이상</td> <td>11개월이상</td> </tr> <tr> <td>차감률</td> <td>80%</td> <td>70%</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1개월이상	차감률	80%	70%	30%	20%	10%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1개월이상								
차감률	80%	70%	30%	20%	10%								

<p>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p>	<p>○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p> <p style="text-align: center;">$\text{기본이자율} \times (1 - \text{차감률}) \times \text{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 연 0.10%)</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만기일</p>
-------------------------------	--


<p>만기후 이자율 (2023.06.15 현재, 세전)</p>	<p>○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0.10%)</p> <p>○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0.10%)</p> <p>○ 만기후 6개월 초과: 연 0.10%</p> <p style="text-align: center;">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과</p> <p>※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p>
---	---

<p>만기이자 산출근거</p>	<p>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p> <p>1회차 $\frac{\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24}$ 2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 ⋮ 24회차 $\frac{\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24}$</p>								
<p>신청 및 가입</p>	<p>위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가입신청 - 신한 쏘(S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출시 첫 5영업일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 후 약 3주]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및 가구원 소득, 가구원 확정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 [2단계] 계좌개설 (신한 쏘(SOL) 또는 영업점) 								
<p>이용 채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가입신청(자격조회) 시</th> <th style="width: 40%;">계좌개설 시</th> </tr> </thead> <tbody> <tr> <td>내국인</td> <td rowspan="2">신한 쏘(SOL)</td> <td>신한 쏘(SOL) 또는 영업점</td> </tr> <tr> <td>외국인</td> <td>영업점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불가)</td> </tr> </tbody> </table>	구분	가입신청(자격조회) 시	계좌개설 시	내국인	신한 쏘(SOL)	신한 쏘(SOL) 또는 영업점	외국인	영업점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불가)
구분	가입신청(자격조회) 시	계좌개설 시							
내국인	신한 쏘(SOL)	신한 쏘(SOL) 또는 영업점							
외국인		영업점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불가)							
<p>계약해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전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미적용 및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p>일부해지</p>	<p>불가</p>								
<p>원금또는이자 지급관련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p>자동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원하는 날짜/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 해당 상품은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상품으로, 가입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자동이체를 지정하는 경우 가입한 응답월은 자동이체에 실패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3년 7월 20일 가입시, 매년 7월 20일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생성. 								

	<p>매월 1일 자동이체 설정시 매년 7월 1일은 자동이체 실패, 7월 20일 이후 입금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p>[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p> <p>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p>
재예치	불가
재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은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재신청하는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1)}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p>^{주1)}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u>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올림 한 기간</u>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p> <p>※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가입일('23.7.10일), 만기일('28.7.10일) 가정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일('23.7.10)~'23.8.9일 사이 해지시 → 가입기간 1개월로 산정 - '23.8.10일~'23.9.9일 사이 해지시 → 가입기간 2개월로 산정 - '23.9.10일~'23.10.9일 사이 해지시 → 가입기간 3개월로 산정 - '24.6.10일~'24.7.9일 사이 해지시 → 가입기간 12개월로 산정 <p>※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개별 가입건의 가입유지기간을 위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p>
거래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명의, 계좌분할, 양도 불가 2) 담보제공: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100% 이내로 가능)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과 비과세혜택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단, 1~3 중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조세특별제한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특별중도해지 제외)한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p>※ 가입시기에 따른 비과세 부적격시 사후처리</p> <table border="1" data-bbox="392 280 1430 521"> <thead> <tr> <th>신청시기</th> <th>소득요건 검증</th> <th>비과세 사후검증</th> <th>비과세 부적격</th> </tr> </thead> <tbody> <tr> <td>1~7월</td> <td>전전년도 소득</td> <td>직전년도</td> <td>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정부기여금 지급)</td> </tr> <tr> <td>8~12월</td> <td>직전년도</td> <td>직전년도</td> <td>납입 중지</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만기해지 시 비과세 적용</p> <p>※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p>	신청시기	소득요건 검증	비과세 사후검증	비과세 부적격	1~7월	전전년도 소득	직전년도	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정부기여금 지급)	8~12월	직전년도	직전년도	납입 중지														
신청시기	소득요건 검증	비과세 사후검증	비과세 부적격																								
1~7월	전전년도 소득	직전년도	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정부기여금 지급)																								
8~12월	직전년도	직전년도	납입 중지																								
<p>정부기여금</p>	<p>- 가입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이 적금의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p> <p>①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만기전 해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p> <p>②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p> <p>- 정부기여금은 아래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합니다.</p> <p>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p> <p>-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매월 및 연간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11 1093 1406 1491"> <thead> <tr> <th colspan="2">개인소득</th> <th rowspan="2">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th> <th rowspan="2">정부기여금 지급비율</th> </tr> <tr> <th>총급여 기준</th> <th>종합소득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2,4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이하</td> <td>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td> <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td> </tr> <tr> <td>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td> <td>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td> <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td> </tr> <tr>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 <td>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td> <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td> </tr> <tr> <td>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 <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 <td>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td> <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td> </tr> <tr> <td>6,000만원 초과</td> <td>4,800만원 초과</td> <td>미지급</td> <td>미지급</td> </tr> </tbody> </table> <p>※ 정부기여금 예시</p> <p>① 개인소득 총급여(근로소득) 기준으로 2,000만원(5년간 소득 변동 없다고 가정할 시)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지원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p> <p>② 개인소득 6,500만원(5년간 소득 변동 없다고 가정할 시) 가입자가 '23.8.1. 신규 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지원금 계산 ⇒ 미지급</p> <p>※ 정부기여금의 개인소득 구간 산정</p> <p>① 정부기여금의 개인소득 구간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p>②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금액은 가입일 기준으로 1년동안 적용</p> <p>③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는 연간 기준 동안 적용</p> <p>④ 개인소득 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 중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가장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기여금 비대상)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자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p> </div>
<p>위법계약해지권</p>	<p>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p>
<p>자료열람 요구권</p>	<p>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이용제한 사항</p>	<p>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p>
<p>예금 해지 시 불이익</p>	<p>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 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시 기본이자율 적용,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급)</p> <p>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한 기간은 추후 재가입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p>

<p>휴면예금 및 출연</p>	<p>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p>
<p>예금자보호여부</p> 	<p>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수수료</p>	<p>해당없음</p>
<p>인용출처</p>	<p>해당없음</p>

3.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 가입을 위한 나이요건, 소득기준, 개인소득금액 확인 및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등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상세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적금 자격조회 신청 후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상품 신규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신한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 해지(만기일포함)하여야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예외)

본 상품은 신한은행 디지털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최고이자율	연 6.00%		
	'23.06.15 현재, 세전 우대이자율 최고 연 1.50% 포함 (자세한 우대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계약기간	60개월		
가입대상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		
가입 및 월납입금액	1천원 이상 월 70만원 이하, 연 840만원 이하		
재예치	X	자동해지	가능
일부해지	X	불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p>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p> $\text{기본이자율} \times (1 - \text{차감률}) \times \text{경과월수} / \text{계약월수} \text{ (단, 최저 연 0.10\%)}$
	<p>유의사항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p>

※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